

# 한국P&G, 외환 1700억원 불법거래

검찰청, 재무이사 1억원 약식기소 ... 계열 4사 3000만-2억원 약식기소

다국적 화학기업인 P&G의 한국법인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원대의 외환거래를 하다 역대  
의 고액 벌금을 물게 됐다.

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2월15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(외국환  
거래법 위반)로 한국P&G 재무담당 이사 M씨(35·인디아인)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.

또 같은 혐의로 한국P&G의 4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-2억원에 약식기소했다.

검찰 관계자는 “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규모가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  
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, 외화 유출이나 관세포탈 혐의는 없어 정식기소는 하지 않았다”고  
밝혔다.

검찰에 따르면, 한국P&G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말까지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1700억  
원의 수출입 대금을 일본과 미국 등지에 있는 P&G 법인과 상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외국환거래법은 해외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 법  
인들이 수출입 대금을 상계할 때 외국환거래은행장에게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12/19>